

03 | 중대재해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중대산업재해치상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5년
2	중대산업재해치사	10월 - 2년	1년6월 - 4년	3년 - 10년

▷ 중대산업재해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중대산업재해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주요 특징

- 중대산업재해치상

- : 선고사례가 1건(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5. 12.까지 1심 선고된 단일 및 동종경합범 사건 중 확정된 사건 기준)에 불과하여 유사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기로 함
- : 법정형(7년 이하), 보호법익(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같이 하고 책임과 불법성의 정도가 유사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의 대유형 2 중 소유형 3)와 동일한 형량범위 권고

- 중대산업재해치사

- : 기본영역의 하한을 법정형 하한(1년) 및 평균형량(13.98월)보다 높은 1년6월로 설정함
- :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특별가중을 통하여 징역 15년(= 가중영역 상한 10년 × 1.5배)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함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불법성이 큰 사건에서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함

: 다만 법정형의 범위(1년 이상의 징역) 자체가 넓고, 피해의 규모와 정도,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 구체적 사고 경위 등에 따라 죄질·범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를 다소 넓게 설정함

- 5년 내 재범

: 중대산업재해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중대산업재해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도록 함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안 - ‘별지 1’과 같음

● 주요 특징

-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므로 기존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을 기초로 하여 중대재해 범죄의 특수성을 일부 반영한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을 마련함
- ① 과거 다수의 양형 사례에서 유족과의 합의를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및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다른 범죄군(살인, 강도, 교통, 방화, 손괴, 약취·유인·인신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 폭력 등)에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있는 점, ③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두어 유족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포함하기로 함

- 산업안전보건 범죄에서는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두고 있으나, 중대재해 범죄에서는 위반 사항의 단순 시정을 넘어 실효적 재발방지조치의 이행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양형에 반영하도록 함
 ⇨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일반감경인자로 두고 상세한 내용의 정의 규정을 마련함

② 교통범죄 관련

가. 음주측정방해

- 음주측정방해가 음주측정거부와 법정형(징역형 1년 이상 5년 이하, 벌금형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이 동일한 점 및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위법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유형 구분 없이> 음주측정방해는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하게 권고 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을 마련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5	음주측정거부 · 음주측정방해	6월 - 1년2월 300만 원 - 1,000만 원 ₂₎	8월 - 2년 700만 원 - 1,500만 원 ₂₎	1년6월 - 4년 ₄₎	1년↑5년↓ 500만 원↑ 2,000만 원↓

- ▷₂₎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₄₎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4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하고, 5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3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나.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등

▣ 권고 형량범위 및 형종 선택기준

● 권고 형량범위 및 형종 선택기준안

- 지난 2026. 6. 22. 양형위원회 제146차 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추가 설정하기로 한 도로교통법상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측정 방해 범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및 형종 선택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기로 함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6월-1년2월 300만 원 - 1,000만 원	8월-2년 700만 원 - 1,500만 원	1년6월-4년 1,300만 원 - 2,000만 원	1년↑5년↓ 500만 원↑ 2,000만 원↓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년-2년4월 700만 원 - 1,500만 원	1년6월 - 3년6월 1,200만 원 - 3,000만 원	2년6월-4년6월	2년↑6년↓ 1,000만 원↑ 3,000만 원↓
3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6월-1년4월 300만 원 - 1,500만 원	8월-2년6월 1,000만 원 - 3,000만 원	1년6월-4년6월	1년↑6년↓ 500만 원↑ 3,000만 원↓

▷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1유형의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주요 특징

-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모든 영역에서 징역형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특히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범죄의 가중영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역형만을 권고하도록 함
-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영역에서 징역형만을 권고하도록 함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안 - ‘별지 2’ 와 같음

- 주요 특징

- 일반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의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을 대부분 원용하되, 무면허운전에만 적용되는 ‘생계형 범죄’ 를 일반감경인자에 포함시키지 않음

다. 교통사고(대유형 1) 및 교통사고 후 도주(대유형 2)

- 징역형 권고영역에서 일정한 경우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게 하는 서술식 기준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가능사유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추가함 ➡ 상세 내용은 후첨 설명자료의 해당 부분 참조
- 신설된 음주측정방해죄를 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의 부정적 참작사유인 ‘동종 전과’의 하나로 규정함(대유형 3 ‘음주·무면허운전’의 경우도 동일함)

□ 향후 일정

- 다음 제149차 회의는 2026. 11. 6.(금) 개최 예정

- 안건

-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심의

1. 제148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 일시 : 2026. 9. 21. 15:00 ~

■ 장소 : 대법원 401호 회의실

■ 회의 결과

- 제10기 양형위원회의 하반기 과업 범위에 해당하는 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②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하였음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현행의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범죄 양형기준을 기초로 중대재해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함
 - 중대산업재해치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위반치사범죄와 법정형(7년 이하), 보호법익 등이 동일하므로 그와 동일하게 형량범위를 설정
 - 중대산업재해치사는 피해 규모(피해자 수), 피해 정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 구체적 사고 경위(관련자들의 각 의무 위반 중첩으로 사고 발생, 피해자 과실 여부 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죄질·범정이 달라질 여지가 커서 형량범위를 넓게 설정하면서도,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불법성이 큰 사건에서는 특별 조정을 통하여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함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

로 설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일반감경인자로
둬으로써, 단순히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를 넘어서 실효적 재
발방지조치의 이행에까지 이른 경우 이를 양형에 반영하기로
함 ⇨ 나아가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주요긍정사유로 격상시켜 양
형의 예방적 관점에서 재발방지조치를 이행하도록 유인 구조를
설계함

● [교통범죄 양형기준]

- 신설되는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등은 ① 범죄의 중대성과 입
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모든 영역에서 징역형의 선고가 가능하
도록 권고하고, ②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 음
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범죄의 가중영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역형만을 권고하도록 하며, ③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
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영역에서
징역형만을 권고하도록 설정함
- 음주측정방해죄의 신설에 따른 양형기준은 법정형, 불법성의 정
도 및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여 음주측정거부와 동
일하게 두면서 현행의 교통사고(대유형 1), 교통사고 후 도주(대
유형 2), 음주·무면허운전(대유형 3) 등에서도 위 음주측정방해
전력이 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의 부정적 참작사유로 기능하
도록 관련 내용을 수정함

2.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심의 결과

가. 회의 진행 경과

- 2026. 5. 11. 제145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를 전제로 구체적인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함

나. 권고 형량범위

1)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추상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중전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구체적으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형법>임
- 사망자 발생 여부, 부상자 발생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고, 구성요건에 사망자(1명 이상)와 부상자(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2명 이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는 1년 이내 3명 이상) 수를 명시하고 있음

2) 권고 형량범위 정리

■ 법정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치사상	제6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1년↑ 또는 10억 원↓ (병과가능)
		제6조 제2항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다목(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7년↓ 또는 1억 원↓
		제6조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	형 1/2 가중

■ 권고 형량범위(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중대산업재해치상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5년
2	중대산업재해치사	10월 - 2년	1년6월 - 4년	3년 - 10년

▷ 중대산업재해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중대산업재해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중대산업재해치상

- **선고 사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5. 12.까지 1심 선고된 단일 및 동종경합범 사건 중 확정된 사건 기준)가 단 1건(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뿐이므로 규범적 설정이 불가피함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양자 모두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중대산업재해치상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의 대유형 2, 소유형 3)와 법정형(7년 이하)이 동일하므로, 그 형량범위를 차용하여 체계정합성을 높임

■ 중대산업재해치사

- 중대산업재해치사는 법정형(1년 이상)의 범위 자체가 넓고, 피해 규모(피해자 수), 피해 정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의 정도, 구체적 사고 경위(관련자들의 각 의무 위반 중첩으로 사고 발생, 피해자 과실 여부 등) 등과 같이 다양한 요인에 따라 죄질·범정이 달라질 여지가 커서 형량범위를 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신고 사례 중에는 영세한 사업체 운영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피해자가 피고인의 친족인 경우도 있음) 소규모의 일반적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도 적지 않음
- 양형기준은 수범자인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경영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특별가중을 통하여 징역 15년(= 가중영역 상한 10년 × 1.5배)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설정함으로써 입법취지를 살리고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되, 의무반에 대한 넓은 스펙트럼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감경영역의 하한을 설정함

다.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의 주요 설정 내용

■ 기본 설정 방식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범죄 기초

-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별가중인자(행위)]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범죄 모두 유사한 취지의 특별가중인자(행위)를 두고 있으므로 중대재해범죄에서도 양형인자로 설정함
-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은 포괄적·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양형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한 특수한 상황, 양형기준이 산업 현장에서 일응의 지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

한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규정함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중대재해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나 종사자의 의견 제시 또는 보고가 있었거나,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아차사고)이나 경미한 재해를 이미 확인하였거나 보고받았고, 개선방안 마련·이행의 필요성이 명백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견·보고를 묵살한 경우
 - 동일·유사 공정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시정명령이나 권고 또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조치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 미숙련 종사자의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유해·위험요인이 장기간 방치된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작업을 강행 또는 재개하도록 지시한 경우
 - 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도 편성하지 않거나 예산을 삭감 또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면서 수급인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하게 짧은 기간으로 공사기간을 정한 경우
 -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장기간 실시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실시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위 사유가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특별감경인자(행위)]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형벌이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영향을 끼친 외부 요인을 참작함 ➡ 다만 그로 인하여 근로자 측에 지워지는 과도한 부담 등의 불합리는 팔호 속의 단서 규정, 즉 상급자의 지시에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마땅히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소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그 장소에 출입한 경우(다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 피해자가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경우
- 피해자가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필수 안전장치를 끄거나 안전고리를 풀고 작업하는 등 자기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시설의 설치에 피해자가 관여하여 그 시설의 위험성을 피해자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경우(다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임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 공동작업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을 유발한 경우로서~~ 사고 발생을 유발하거나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로서 공동작업자의 과실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하나의 사건으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양형인자를 공유함 ⇨ 공통적으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두는 것이 실무의 양형사례, 형평 등에 부합함
- ① 과거 다수의 양형 사례에서 유족과의 합의를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및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다른 범죄군(살인, 강도, 교통, 방화, 손괴, 약취·유인·인신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 폭력 등)에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있는 점, ③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두어 유족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포함하기로 함

■ [일반감경인자(행위자/기타) 및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

-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일반감경인자(행위자/기타)로서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가 존재함 ⇨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단순히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를 넘어서 실효적 재발방지조치의 이행에까지 이른 경우 양형에 반영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견인하도록 함이 상당함
- 다만,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일반감경인자로 설정하는 것과는 달리,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주요긍정사유로 상향함으로써, 재발방지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함 ⇨ 양형의 예방적 관점 고려

3. 교통범죄 양형기준 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심의 결과

가. 회의 진행 경과

- 2026. 6. 22 제146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를 전제로 구체적인 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함

나. 음주측정방해

-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하게 권고 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을 마련함

- 음주측정방해는 음주측정거부와 법정형(징역형 1년 이상 5년 이하, 벌금형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이 동일하고, 입법 취

지와 규정 내용, 불법성의 정도 등이 유사함

다.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등

■ 권고 형량범위 및 형종 선택기준

● 권고 형량범위 및 형종 선택기준안

- 지난 2026. 6. 22. 양형위원회 제146차 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추가 설정하기로 한 도로교통법상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측정방해 범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및 형종 선택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기로 함
- 현행 양형기준상 일반 음주·무면허운전의 형량범위 및 그 법정형,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는 취지,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6월-1년2월 300만 원 - 1,000만 원	8월-2년 700만 원 - 1,500만 원	1년6월-4년 1,300만 원 - 2,000만 원	1년↑5년↓ 500만 원↑ 2,000만 원↓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년-2년4월 700만 원 - 1,500만 원	1년6월 - 3년6월 1,200만 원 - 3,000만 원	2년6월-4년6월	2년↑6년↓ 1,000만 원↑ 3,000만 원↓
3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6월-1년4월 300만 원 - 1,500만 원	8월-2년6월 1,000만 원 - 3,000만 원	1년6월-4년6월	1년↑6년↓ 500만 원↑ 3,000만 원↓

▷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1유형의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

인자가 특별감정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징역형 영역의 설정

-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개별 소유형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징역형을 설정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 5년 ↓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 6년 ↓
3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1년 ↑ 6년 ↓

● 벌금형 영역의 설정

- 소유형 2, 3의 가중영역은 징역형 권고영역으로만 설정하되, 소유형 1의 가중영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음주운전 등 소유형 2, 3에 비해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징역형/벌금형 중첩영역으로 설정하고, 서술식 기준으로 징역형 권고사유를 정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500만 원 ↑ 2,000만 원 ↓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000만 원 ↑ 3,000만 원 ↓
3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500만 원 ↑ 3,000만 원 ↓

▷ 1유형의 가중영역 :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

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의 주요 내용

- 현행의 일반 음주·무면허운전의 양형인자를 대부분 차용하되 처벌 전력에 관한 부분은 애초에 유형 자체가 재범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중평가의 위험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수정함
- 일반 음주·무면허운전에서도 무면허운전에만 적용되는 ‘생계형 범죄’를 일반감경인자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라. 교통사고(대유형 1) 및 교통사고 후 도주(대유형 2)

■ 현재의 형량범위는 유지하면서 징역형 권고영역에서 일정한 경우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게 하는 서술식 기준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가능 사유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추가함

- 현행 벌금형 선택 가능사유는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므로 위 인자가 존재하면서도 “기본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은 특별가중인자가 존재한다는 것 → 즉 특별가중인자가 존재하는 사안에서만 일정한 경우 벌금형 선택 가능
 - 어린이 교통사고 벌금형 선택 가능 사례 예시: ① 신호위반·횡단보도 어린이 교통사고 + 경미한 상해 또는 합의, ② 동종 누범 + 경미한 상해 또는 합의, ③ 중상해 + 합의
- 반면, 특별가중인자도 특별감경인자도 존재하지 않는 사안(예: 단순 어린이 교통사고 + 초범)에서는 징역형 선택만이 권고됨 →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나 누범, 중상해의 경우 예외적으로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나,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경우에 징역형만을 권고하는 불균형이 발생함

- 따라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를 벌금형 선택 가능사유로 추가하여 위와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 신설된 음주측정방해죄를 가증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의 부정적 참작 사유인 '동종 전과'의 하나로 규정함

4. 향후 일정

- 제149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 2026. 11. 6.(금) 개최 예정
 -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심의

별지 1

중대재해범죄(대유형 3)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때는 제외)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행위자/기타	●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 ● 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양형인자의 정의]

가.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그 장소에 출입한 경우(다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 피해자가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경우
- 피해자가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필수 안전장치를 끄거나 안전고리를 풀고 작업하는 등 자기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시설의 설치에 피해자가 관여하여 그 시설의 위험성을 피해자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경우(다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임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 공동작업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을 유발한 경우(과실치사상 범죄, 산업안전보건 범죄) 또는 사고 발생을 유발하거나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중대재해 범죄)로서 공동작업자의 과실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과실치사상 범죄 중 2유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다.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 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라. 실질적 피해 회복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범의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마.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과실치사상 범죄 중 2유형)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사.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과실치사상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를 담당한 경우
 - 면허 등 법정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자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

-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위 사유가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아.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산업안전보건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위 사유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자.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중대재해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나 종사자의 의견 제시 또는 보고가 있었거나,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아차사고)이나 경미한 재해를 이미 확인하였거나 보고받았고, 개선방안 마련·이행의 필요성이 명백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견·보고를 묵살한 경우

- 동일·유사 공정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시정명령이나 권고 또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조치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 미숙련 종사자의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유해·위험요인이 장기간 방치된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작업을 강행 또는 재개하도록 지시한 경우

- 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도 편성하지 않거나 예산을 삭감 또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면서 수급인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하게 짧은 기간으로 공사기간을 정한 경우

-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장기간 실시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실시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위 사유가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차.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

●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동일·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조치가 해당 사건에서 재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위반사항에 대한 실효적·실질적 개선에 이르고, 나아가 같은 원인에 의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의 개선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단순한 재발방지 노력이나 다짐의 표명, 규정·매뉴얼의 문언 정비 등 형식적 조치에 그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 등 절차(위험성평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카. 보험 가입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자동차종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과실치사상 범죄 중 2유형)

-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醜相) 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때는 제외)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구분	부정적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보험 가입 ● 상당한 피해 회복

끝.

별지 2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대유형 3, 중유형 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3유형)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무면허운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집행유예 기준]

- 현행의 음주·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준을 원칙적으로 공유하면서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함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일반 음주·무면허운전)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끝.